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6	ㅇ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		개정 사항 반영(체납처분
세조사·세원관리 및 <u>체납처분</u> 등 관세	강제징수	-> 강제징수)
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		
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		
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		
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 ③ (생	제12조(위촉 배제 및 해촉) ① ~ ③ (현	ㅇ 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략)	행과 같음)	점검주기 변경(반기별 ->
		임기 중 1회 이상)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반기별로 점검해 야 한다.

⑤ (생략)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제

- ① (생 략)
- ②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은 관세 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 후 처리할 본부세관을 지정한 후 이송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4)
<u>임기 중 1회 이상</u>
⑤ (현행과 같음)
11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민원

③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 ㅇ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납 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 세자보호담당관 전담 처리 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규정 신설 경우 민원인에게 「관세법」 제118조의 2 내지 5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

	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47호 서
	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
	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
	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
	충민원을 처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
	호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이관해야 한
	<u>다.</u>
<u><신 설></u>	
	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납세
	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한 경우 국민신
	문고 시스템에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답
	변 처리한다 <u>.</u>
<신 설>	
	처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접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 설>	8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
<u>ua ta</u>	

제54조(요청 대상) ① ~ ② (생 략)

③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 청은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관세행 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 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다.

1. ~ 10. (생 략)

④ (생 략)

제5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② (생 제55조(권리보호요청 방법) ① ~ ② (현 략)

<신 설>

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고충 민원이 국민신문고시스템에 최초 등록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4조(요청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 유)

(3)	 	
	 강제	징수

1.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4조제1항 ㅇ 권리보호요청 사안 인지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하는 관세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 경우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 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 ㅇ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 개정 사항 반영(체납처분 -- -> 강제징수)

	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고, 그 결	규정 마련
	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8호 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	
	지서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종전의 제3항과 같다)	
제64조(보정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	제64조(보정요구) <u>①</u>	
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기 전까지 기		
간을 정하여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보		
정을 요구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 이내	ㅇ 보정기간 신설
	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62조에 따른 처	
	리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제6장의2 과태료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	ㅇ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회 심의	납세자 의견 제출시 납세자
		보호담당관 처리 규정 신설
<u><신 설></u>	제88조(내용 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납	

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 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접수 다음 날까 지 보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처분 담 당부서에 통지한다.

제89조(대리인) 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납세자(이하이 장에서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권리보호요청"이라 하고 의견을 제출한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인"이라한다)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과태료 사전통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 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 설>

<u><신</u>설>

<u><신 설></u>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u>한다.</u>
<u><신 설></u>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권리보호요
	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보호요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u><신 설></u>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u><신 설></u>	제90조(권리보호요청 기간) 과태료에 대
	한 권리보호요청은 세관장으로부터 과
	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할 수 있다.
<u> <신 설></u>	제91조(처리기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u> <신 설></u>	제92조(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준용 규정) 이 장에 규정된 권리보호요

I		
	청에 대한 관세청 및 본부세관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64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를 준용	
	<u>한다.</u>	
<u><신 설></u>	제93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는 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u>다.</u>	
<u>제88조 ~ 제90조</u> (생 략)	<u>제94조 ~ 제96조</u> (종전의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와 같다)	
제8장 <u>제도개선</u>	제8장 관세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u><신 설></u>	제1절 관세조사 모니터링	ㅇ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u> <신 설></u>	제97조(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① 관	
	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9호 서식의 관세조	
	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	
	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	
	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u><신 설></u>	②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결	

	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
	지 제49호 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
	(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
	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
	<u>다.</u>
<신 설>	제98조(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
<u> </u>	당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
	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
	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
	50호 서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크리스
	트에 의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u>\t\t\t\t\t\t\t\t\t\t\t\t\t\t\t\t\t\t\t</u>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속하게 시
	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
< x1	<u>해야 한다.</u>
<u><신 설></u>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7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의 고
	<u>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u>
	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u>해야 한다.</u>
<u><신 설></u>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
	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해
	<u>야 한다.</u>
<u><신 설></u>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
	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
	항이 제기된 경우 관세조사 소관 부서
	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u><신 설></u>	⑥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제2항에 따
	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보호담딩
<u><신 설></u>	<u>제99조(납/</u>
	의) ①

<신 설>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해야 한다.

에 99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7호 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u> <신 설></u>	제100조(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과 관련한 준용 규정) 제99조에 따른
	<u>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u>
	제65조, 제67조부터 제76조를 준용한
	<u>다.</u>
<u><신 설></u>	제101조(사후관리) 조사국(과)장은 제98
	조제6항 및 제99조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
	용해야 한다.
<u><신 설></u>	제2절 제도개선
<u>제91조</u>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⑤ (생	<u>제102조</u>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⑤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 ㅇ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 제도개선 요청 근거규정 신
	⑥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 ㅇ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설
	<u>있다.</u>	
<u>제92조 ~ 제96조</u> (생 략)	<u>제103조 ~ 제107조</u> (종전의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와 같다)	

서 약 서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 3. 본인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 4.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5. 본인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주소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세관장(관세청장) 귀하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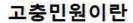
본인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본인은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개인정도 영국	연락처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이용목적	【수집 및 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5년
1. 개인정보보호법	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대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위 내용에 □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동의사항
1. 본인은 국민신	문고에 제기한 고충민원을「관세법」제118조의2 내지 5에 따른 납세자보호(담당)관여
처리함에 동의	합니다.
□ 난세자보호	제도 이용에 동의합니다. □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 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고충민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자보호제도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 고충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안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권리보호



★ 처리업무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시정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절차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방향 검토

소관 부서 의견 조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기 관 명

관세청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 과정에서 귀하(귀사)의 권리를 침해한 관세공무원의 행위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권리침	해 내용	
처리	내용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관	납세자보호담	당관 ○○○	조사관(전화 :	, 전송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	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u>!</u> 자)	접수		처리과명-일	J련번호(접=	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	지 주소			
전화(전송()		/	기안자의 공	공식전자우편주	·소	/ 공개구분	
						210mm×29	97mm(백상지 8	30g/m²)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49호 서식]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조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일련		사반장 건먼	상호	호 직위 성명 연락처 조사 조사 통화일 리스트			불만 및 건의사항				
뛴오	직급	성명					유형	기간		회수여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50호서식]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파력하기 세크니 <u></u> 그그	조사개시일:	년 *	월	일	
구분	관세조사절차 적법 준수 여부 및 청렴성	1 OTIMI FIIT - 11 77 1 4 E		답변		
下正	선세소사일자 역립 군구 어구 및 성임성	3 ㅠ시에 내인 제그	그니스트	양호	불량	
1	「관세조사 사전 통지」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받았습니까	?			
2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	설명을 들었습니까'	?			
3	조사공무원이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성	상세히 설명을 하였	(습니까?			
4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조사유예 신청에 다	서해 안내를 받았습	니까?			
5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까?					
6	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받았습니까?					
7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 분한 설명을 하였습니까?					
8	서류, 증명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국					
9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해명기회가 귀하에게	충분히 제공되었습	하니까?			
10-1	당초 통지된 조사범위(분야, 조사대상 기간) (조사범위 확대 시 :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하	-				
10-2	조사기간은 당초 통지된 조사기간 내에 종료되었습니까? (조사기간 연장 시 :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통지를 받았습니까?)					
11	관세조사 결과(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12	조사공무원이 친절하였습니까?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조사개시일: 년 월 일

* 4	명처리들 원하시는 경우 조사공무원 성명과 조사개시일은 기재들 생탁할 수 있습니	나.	
\Diamond	아래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체로 약간 보통이다 약간 대체로 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		
	1 2 3 4 5 6 7	7	
1-1	귀하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2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된 조사범위, 조사기간과 적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였다.	(점)
1–3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점)
1–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점)
1–5	조사종료 후 과세내용(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6	조사종료 후 후속절차와 불복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2–1	조사공무원은 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점)
	조사공무원의 자료요구가 무리함이 없었고 해명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하였다.	·····(점)
	조사 중 조사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하였다.	(점)
	조사공무원은 쟁점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 L/ 점)
_ '			ш/
3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및 조사 종료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점)
4–1	조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	랍니[가 .
	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조사 진행 ② 조사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③ 조사과정에서의 업무처리 지연 ④ 조사결과 통보의 지연		
	⑤ 조사공무원의 불친절 ⑥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① 조사업무를 상담할 직원의 부족 ⑧ 조사 중 직원 교체시 인계인수의 미흡 ⑨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관리 부실		
	① オイキョン・・・・・・・・・・・・・・・・・・・・・・・・・・・・・・・・・・・・		
	① 해당 없음		
4–2	조사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3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탄	하여
	① 현행 부패방지 제도 및 시스템 ② 직원 개개인의 청렴실천 의지		
	③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④ 부패행위에 관대한 조직문화		
	⑤ 대리인 등의 부패행위 조장 ⑥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활동		
	⑦ 기관 전체의 청렴실천 의지 ⑧ 고위직의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⑨ 기타(⑩ 해당 없음		
	U 11 U 12/11 U		